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보안감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미래행정 조직 장기관리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민참여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조례 감면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송무지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어린이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취득·활용 및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부합동점검단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현장 수습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가축질병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후방지역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구촌새마을운동 국제적 확산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협력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를 설치하고, 정부청사 조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호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장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

명)의 존속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으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9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
술직군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6항제1호 중 “국민”을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 국
민”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68호”를 “제57호까지, 제57호의2, 제57호의3 및 제58
호부터 6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치행정과·주민과·민간협력
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자치분권제도과·자치분권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지역사회혁신정책과·지
역공동체과·주민참여협업과·지역균형발전과·생활공간정책”을 “자치
행정과·주민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자치분
권제도과·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과·자치법규과
·지역사회혁신정책과·지역공동체과·주민참여협업과·지구촌새마을
과·지역균형발전과·생활공간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제10호부
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 부터 제24항을 각각 제2
3항부터 제2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구촌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현대적 계승 발전 및 활성화 지원

3.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운영

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관리

6.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7. 지구촌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8.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발굴

9.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0.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1. 새마을운동 사업관련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관리

12.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DB) 관리

1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포상·관리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18조제9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1항제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관리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 중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을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으로,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을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

2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⑪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확산 지원
5. 타 기관 통신망, 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 대구, 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훈련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2항(중전의 제1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제5항 중 “재난협력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재난안전조사와·재난안전연구개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보

건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수습지원과”를 “재난협력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재난안전조사와·재난안전연구개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감염병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수습지원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보건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감염병재난대응과장·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재난대응과장”을 “감염병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축질병·보건의료 사고, 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을 “보건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가축질병등 재난”이라 한다)와 감염병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3. 가축질병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5.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9.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1.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제23조제2항 중 “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로,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을 “·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역량 평가·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2. 역량 평가·교육 제도 개선 연구
3. 역량 평가·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
4. 역량 평가·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역량·평가 진단시스템 운영 및 시·도 역량 평가·교육 지원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대통령 기록관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생산지원과·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기록관리과장·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관 내 보안·감사·문서수발·관인 및 통계 관리
5. 예산·회계·결산·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6. 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배치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점검 및 관리

10.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정비
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1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관리 및 백서 발간
14.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추진
15.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컨설팅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수집·등록
5.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
7. 대통령상징물·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보존매체 수록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등록·상태검사·복원 및 정수점검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7.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개발
8.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9.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0.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관리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지원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리·운영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반·출입 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전자화 계획 수립·시행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
6.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운영
7.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8.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9.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1. 전자기록물 재난관리·복구시스템의 운영·관리

제50조제2항 단서 중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9명, 7급 1명)의”를 “별표 4의2의 정원 중 3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이 경우 대통

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 중 “재난정보통신”을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을 “2023년”으로 한다.

-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561”을 “1,598”로 하고, 일반직 계 “1,532”를 “1,56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3”을 “1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4”를 “5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1”을 “168”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84”를 “85”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7”을 “19”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2”를 “44”로,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0”을 “1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9”를 “200”으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를 “6”으로, 전산주사 “30”을 “3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

사보 “13”을 “1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0”을 “8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576”을 “1,6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47”을 “1,58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3”을 “1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4”를 “5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1”을 “168”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88”을 “89”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7”을 “19”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2”를 “44”로,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0”을 “1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9”를 “200”으로,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를 “6”으로, 전산주사 “30”을 “3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을 “85”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3(중전의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2”를 각각 “33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7”을 “8”로 하며, 별표 4의4(중전의 별표 4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2”를 각각 “333”으로 하고,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7”을 “8”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4의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8”을 각각 “749”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3”으로, 방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시설주사 “16”을 “17”로, 공업주사보 “11”을 “12”로,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6”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건축운영주사 1”를 삭제하며, “통신운영주사 1”를 삭제하고, 통신운영주사보 “3”을 “2”로, 기계운영주사보 “3”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9”를 각각 “7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3”으로, 방송통신주사 “12”를 “13”으로, 시설주사 “16”을 “17”로, 공업주사보 “11”을 “12”로,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6”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건축운영주사 1”를 삭제하며, “통신운영주사 1”를 삭제하고, 통신운영주사보 “3”을 “2”로, 기계운영주사보 “3”을 “2”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5”를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6”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45”를 “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6”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8”을 각각 “8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87”을 “88”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258
일반직 계	258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9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
사서사무관·시설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4장의2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별표 4의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까지는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구관	1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1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7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5
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6
사	3
사서주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학예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공업주사	1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9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구사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3
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4
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구사	2
공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9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3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7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5
위생서기보	1
조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1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보존매체수록 담당)	1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258
일반직 계	258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9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

사서사무관·시설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1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7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5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
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사서주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학예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공업주사	1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3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전산주사보	2
임업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9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6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공업서기보	2
운전서기보	5
위생서기보	1
조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1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보존매체수록 담당)	1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
(제50조제10항 관련)

총계	75
일반직 계	7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대통령기록관장)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8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9
사	4
공업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서기	5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
기계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대통령기록물관리 담당)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	0명	2021년 7월 31일까지
2)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지원과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3)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2021년 12월 31 일까지
4) 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5)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6) 지방자치분권실 지구촌새마을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7) 재난관리실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8) 재난협력실 감염병재난대응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경감 1명)	2021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6조 관련)

1. 제5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1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2. 제56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1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⑮ (생략) ⑮ 국민참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획</u> · 홍보 2. ~ 18. (생략) ⑮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⑮ ----- -----. 1. <u>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등 국민</u> ----- ----- 2. ~ 18.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④ (생략) ⑤ 지역혁신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u>제68호</u> 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보좌한다. ⑥ (생략) ⑦ 지방자치분권실에 <u>자치행정과 · 주민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공무원단체과 · 자치분권제도과 · 자치분권지원과 · 지방인사제도과 · 선거의회과</u>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제57호까지</u> , <u>제57호의2, 제57호의3 및 제58호부터 제68호</u> ----- -----. ⑥ (현행과 같음) ⑦ ----- <u>자치행정과 · 주민과 · 민간협력과 · 사회통합지원과 · 공무원단체과 · 자치분권제도과 · 자치분권지원과 · 지방인사제도과 · 선거의회과</u>

· <u>자치법규과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지역공동체과 · 주민참여협업과 · 지역균형발전과 · 생활공간정책과 및 주소정책과를 둔다.</u> ⑧ ~ ⑮ (생략) ⑳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10.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 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시행,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원</u> <u>11.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 · 개정 및 운영</u> <u>12.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u> <u>13.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 관리</u> <u>14. 국내 및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지도 · 감독</u> <u>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u> 16. ~ 24. (생략)	<u>자치법규과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지역공동체과 · 주민참여협업과 · 지구촌새마을과 · 지역균형발전과 · 생활공간정책</u> ----- --. ⑧ ~ ⑮ (현행과 같음) ㉑ -----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10. ~ 18. (현행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	--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㉔ 지구촌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현대적 계승 발전 및 활성화 지원
3.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운영
4.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관리
6.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7. 지구촌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8.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발굴
9.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

㉔ ~ ㉔ (생략)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⑧ (생략)

⑨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본계획 수립 및 관리

10.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1. 새마을운동 사업관련 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관리
 12.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DB) 관리
 1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포상·관리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㉔ ~ ㉔ (현행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와 같음)
- 제18조(안전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 ⑨ -----
-----.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7.·8. (생략)	<u>등에 관한 사항</u>	재난보험과 및 재난자원관리과를 두며,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재난자원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지진방재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⑪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⑩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4. 재난안전통신망(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구축·운영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신설>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관리	5.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5. 통합지휘무선통신망-----
5. ~ 22. (생략)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에 관	<삭제>
⑫ ~ ⑮ (생략)	8. ~ 25. (현행 제5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⑥ 재난관리실에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복		

<u>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u>	
7. <u>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u>	7. <u>통합지휘무선통신망</u> ----- -----
8. ~ 16. (생략)	8. ~ 16. (현행과 같음)
17. <u>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u>	<u><삭 제></u>
18. · 19. (생략)	18.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⑪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u>
	2. <u>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u>
	3. <u>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u>
	4. <u>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확산 지원</u>
	5. <u>타 기관 통신망, 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u>
	6. <u>재난안전통신망 서울, 대구, 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u>
	7. <u>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 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u>

	<u>에 관한 사항</u>
	8. <u>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 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u>
	9. <u>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훈련</u>
	10. <u>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u>
<u>⑪ 재난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⑫</u>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 설></u>	19. <u>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u>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u>⑫ ~ ⑮ (생략)</u>	<u>⑬ ~ ⑰ (현행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u>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④ (생략)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재난협력실에 재난협력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재난안전조사과·재난안전연구개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보건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수습지원과를 두며, 재난협력정책과장·재난</u>	⑤ ----- <u>재난협력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재난안전조사과·재난안전연구개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감염병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수습지원과</u> -----

안전점검과장·재난안전조사과장·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보건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⑥ ~ ⑪ (생략)

⑫ 보건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재난, 가축질병·보건 의료 사고, 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지역축제·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감염병등 재난”이라 한다)와 감염병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 11. (생략)

<신설>

-----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감염병재난대응과장·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
-----.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감염병재난대응과장-----
-----.

1. ----- 보건의료 -----

2. ~ 11. (현행과 같음)

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식용수 사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

고(이하 “가축질병등 재난”이라 한다)와 감염병등 재난과 유사한 재난 및 사고관련 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2.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운영

3. 가축질병등 재난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5.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체계 구축

6.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표준 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실무 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9. 가축질병등 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중앙

⑬ (생 략) ⑭ (생 략) 제23조(교수부) ① (생 략) ② 교수부에 <u>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 및 전문역량교육과</u>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책리더양성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u>지방공무원 역량평가·교육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u> 11. ~ 17. (생 략) ④·⑤ (생 략) <u><신 설></u>	<u>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u> 11. <u>가축질병등 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23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u>----- ----- ·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 ③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 1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u>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방공무원 역량 평가·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u> 2. <u>역량 평가·교육 제도 개선</u>	제28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생산지원과·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기록관리과장·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u>연구</u> 3. <u>역량 평가·교육 모델 및 과제 개발 연구</u> 4. <u>역량 평가·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u> 5. <u>역량·평가 진단시스템 운영 및 시·도 역량 평가·교육 지원</u> <u><삭 제></u>
--	--	---	--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 내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관 내 보안·복무·감사·문서수발·관인 및 통계 관리
3. 예산·회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4.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배치
6.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점검 및 관리
7.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정비
9.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10.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관리 및 백서 발간
11.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도 개선 및 설치 지원·추진
12.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컨설팅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수집·등록
 5.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
 7. 대통령상징물·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서고 배

치 및 보존매체 수록

1의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

· 등록 · 상태검사 · 복원 및
정수접견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 · 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4.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 · 보
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
물의 주기적 재분류

5.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
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6.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 ·
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
· 개발

7.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
항

8.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
관과의 협의 · 조정

9.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
가 및 폐기 제도 운영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⑥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 · 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
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 · 콘
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관리 포털시스템
의 관리 · 운영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
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
협력 총괄 · 지원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
획 · 운영 및 연구 지원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
서실 관리 · 운영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반·출입 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전자화 계획 수립·시행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 6.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운영 7.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8.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9.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1. 전자기록물 재난관리·복구 시스템의 운영·관리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9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신설>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별표 4의2의 정원 중 3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에
---	---	--

<신 설>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장의2 대통령기록관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생산지원과·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기록관리과장·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대통령기록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관 내 보안·감사·문서수발·관인 및 통계 관리

5. 예산·회계·결산·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6. 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공간의 배정·배치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점검 및 관리

10. 대통령기록물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1.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정비

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13.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추진·관리 및 백서 발간

14.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제

도 개선 및 설치 지원·추진

15. 정책홍보 및 국회대응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 관리 지원·컨설팅

3.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국내외 대통령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수집·등록

5. 대통령 관련 구술(口述) 채록·등록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

7. 대통령상징물·대통령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8.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9. 대통령기록관리 분류체계 및 기록관리 기준표 관리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보존매체 수록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이관·등록·상태검사·복원 및 정수점검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해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밀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6.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정리 및 기술

7. 소장 기록물의 정리 체계·기준 관리 및 검색도구 기획·개발

8.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9.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기관과의 협의·조정

10.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⑥ 기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2.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콘텐츠별 서비스 체계 구축
4. 대통령기록관리 포털시스템의 관리·운영
5.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6.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총괄·지원
7.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및 도서실 관리·운영

⑦ 보존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정책의 기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반·출입 관

리 및 보존환경 유지·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탈산·소독 등 보존처리
4. 대통령기록물의 매체수록·전자화 계획 수립·시행
5. 대통령기록물의 정수점검·상태검사 및 복원·복제
6. 대통령기록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관리·운영
7. 전자기록물 이관 및 수집 관련 지원
8. 재난피해 대통령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9. 대통령기록물 보존·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전자매체 점검·관리, 복원·복제 및 디지털포렌식실 운영
11. 전자기록물 재난관리·복구 시스템의 운영·관리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재난관리정책관: 재난관리정책과,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및 재난정보통신과

3. ~ 5. (생략)

제56조(한시정원) ①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14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

1. (현행과 같음)

2. -----

----- 재난정보통신과, 재난안전통신망관리-----

3. ~ 5. (현행과 같음)

제56조(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② -----

----- 2023년-----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두며, 별표 1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561	1,598	+37
일반직 계	1,532	1,569	+3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3	15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4	56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1	168	+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행정주사	84	85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7	19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2	44	+2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0	12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9	200	+1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5</u>	<u>6</u>	+1
·	·	·	
전산주사	<u>30</u>	<u>31</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0</u>	<u>84</u>	+4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576</u>	<u>1,613</u>	+37
·	·	·	
·	·	·	
일반직 계	<u>1,547</u>	<u>1,584</u>	+37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3</u>	<u>15</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4</u>	<u>56</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1</u>	<u>168</u>	+7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	·	·	
·	·	·	
행정주사	88	89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7	19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2	44	+2
·	·	·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0	12	+2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9	200	+11
·	·	·	
·	·	·	
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6	+1

·	·	·	
전산주사	30	31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85	+4
·	·	·	
·	·	·	

[별표 4의3]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2</u>	<u>333</u>	+1
일반직 계			<u>332</u>	<u>333</u>	+1
		•	•	•	
		•	•	•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 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7</u>	<u>8</u>	+1
		•	•	•	
		•	•	•	

[별표 4의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32</u>	<u>333</u>	+1
일반직 계			<u>332</u>	<u>333</u>	+1
		•	•	•	
		•	•	•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 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u>7</u>	<u>8</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48	749	+1
일반직 계	748	749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3	+1
방송통신주사	12	13	+1
시설주사	16	17	+1
공업주사보	11	12	+1
방송통신주사보	15	16	+1

행정서기보	9	10	+1
건축운영주사	1	<삭 제>	-1
통신운영주사	1	<삭 제>	-1
통신운영주사보	3	2	-1
기계운영주사보	3	2	-1
사무운영서기보	4	3	-1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49	750	+1
일반직 계	749	750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3	+1
방송통신주사	12	13	+1
시설주사	16	17	+1
공업주사보	11	12	+1
방송통신주사보	15	16	+1

행정서기보	9	10	+1
건축운영주사	1	<삭 제>	-1
통신운영주사	1	<삭 제>	-1
통신운영주사보	3	2	-1
기계운영주사보	3	2	-1
사무운영서기보	4	3	-1

[별표 6]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45	46	+1
			.	.	.			
			.	.	.			
일반직 계	.		.	.	.	35	36	+1
			.	.	.			
			.	.	.			
방호서기보	.		.	.	.	2	3	+1
			.	.	.			
			.	.	.			

[별표 6의2]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45	46	+1
일반직 계	.		.	.	.	35	36	+1
방호서기보	.		.	.	.	2	3	+1
	.		.	.	.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88</u>	<u>89</u>	+1
일반직 계	<u>88</u>	<u>8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7</u>	<u>88</u>	+1